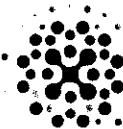


빌간등록번호  
73-6430302-000039-01  
2015-1 현안과제보고서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지역 조례 개정 방향

## 충청북도 시·군 조례 개정 방향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Chungcheongbukdo Women's Development Center







# **충청북도 시·군 조례 개정 방향**

연구책임 : 조혜경(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원)

공동연구 : 이지영(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원)

손은성(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수진(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이 보고서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지역별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충북도 내 시·군의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 활동 지원을 위해 발간합니다. 그간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애쓰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자료로써 본 연구내용이 적극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15. 8.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영경



# 목 차

I	추진배경	5
1.	정책 환경의 변화	5
2.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	6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지역사회의 과제	9
II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내용	11
1.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요 및 구조	11
2.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성	15
3.	법률 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	24
III	양성평등기본조례 현황	36
1.	타 지역 조례현황	36
2.	충청북도 시·군 조례 현황	56
IV	충북지역 조례개정 방향	65
1.	조례개정의 필요성	65
2.	충북지역의 특성과 조례개정의 한계	67
3.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안	70
4.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80
■	부록	
1.	양성평등기본법	103
2.	충청북도/시·군 조례 (양)성평등 균거 조항	123

# 표 목 차

표 1-1.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	7
표 2-1.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비교	14
표 2-2. 전부개정안의 용어 비교	27
표 2-3.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28
표 2-4. 심의조정기구 비교	29
표 2-5. 성평등지수 관련 조항 비교	30
표 2-6.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31
표 2-7.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전부개정안 비교	32
표 2-8. 여성친화도시 관련 개정안 비교	34
표 3-1.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36
표 4-1. 최근 3년간 우리나라 GGI 현황	66
표 4-2. 충북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66
표 4-3. 시·군별 여성의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표 4-4. 충청북도 시·군 여성정책 추진체계	69

## **충청북도 시·군 조례 개정 방향**





# I. 추진배경

## 1. 정책 환경의 변화

###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여성중심(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젠더중심(GAD, Gender and Development)으로 변화하면서 개발담론에서 젠더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여성 대상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처한 차별과 소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WID정책과 달리 GAD적 접근은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음.
- 정책의 시작부터 개발과정에 성(Gender) 관점을 통합하는 주류화 전략 (Gender Mainstreaming)은 성 평등 실현의 주요한 실천방안으로써 「젠더」, 「성 주류화(性主流化)」, 「성인지적 관점」은 90년대 중반 이후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공정책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을 비롯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통계 생산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음.

### ○ 여성발전기본법<sup>1)</sup>의 한계

-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었음.
- 동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등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한 바가 큼.

1) 여성발전기본법 제·개정에 관한 이유 및 연혁, 주요내용 등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참조·인용하였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0년간 큰 폭의 개정 없이 ‘여성발전’의 프레임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 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환경을 담아내기에는 기본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나 여성 인적자원의 광복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정치,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성 평등 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옴.

## 2.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

### ○ 법률 제·개정의 취지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여성발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여성발전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포함하고자 함.
- 현법상 남녀평등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발전 기본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각계각층의 요구 수용

###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

-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되어 전부개정되기까지 총 17차(타법개정을 제외하면 5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제정 당시 동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음(제2조).
- 이러한 기본이념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관계법령에 관한 국가의 이행의지와 실현방법을 표명한 것으로서

모성기능(임신, 출산, 수유기능)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권과 잠재력, 가정과 사회·국가의 발전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새로운 여성관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여성관(남성관)을 재정립하였음.

표 1-1.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

개정 · 공포	제·개정의 주요사유	개정 원인
제정 (1995.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심의를 위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 및 여성문제의 조사·연구를 위한 한국여성개발원을 각각 설치</li> <li>·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 조항 마련</li> <li>· 여성개발기금 설치 등</li> </ul>	
1차(1998.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li> <li>· 정무장관(제2)실의 폐지</li> </ul>	
2차(1999.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개발원의 국무총리산하로의 이관</li> <li>·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폐지</li> </ul>	타법 개정
3차(1999.2.8)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4차(200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부의 설치</li> <li>·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폐지</li> </ul>	
5차(2002.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조치로의 변경</li> <li>· 정책의 성별영향의 분석·평가근거마련</li> <li>·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의 설치</li> </ul>	일부 개정
6차(2002.12.30)	· 국고금관리법의 제정	타법 개정
7차(2005.3.24)	· 여성가족부의 설치	
8차(200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 성희롱방지 교육 등 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li> </ul>	일부 개정
9차(2007.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 변경 (모자기정 → 모자가족, 편부모기정 → 한부모가족)</li> </ul>	타법 개정
10차(2008.2.29)	· 여성부의 설치	
11차(2008.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제고</li> <li>·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li> </ul>	일부 개정

개정 · 공포	제·개정의 주요사유	개정 원인
12차(2010.1.8)	· 부처 명칭 변경 '여성부' → '여성가족부'	
13차(2010.5.17)	· 은행법 개정 관련	타법 개정
14차(2011.6.7)	· 보육시설 명칭 어린이집으로 변경	
15차(2013.8.13)	· 정부위원회 성별할당,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 여성인재 정보 수집 · 관리 등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	일부 개정
16차(2013.12.30)	· 성희롱 예방 및 방지 조치 강화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 ·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 운영의 활성화 · 여성사박물관 근거 규정	일부 개정
17차(2014.5.28.)	·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전부 개정

### ○ 법률 제 · 개정 과정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까지 여성정책관련 법률 제 ·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쟁점사안은 법제명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12. 7. 신한국당(주양자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안」을 주축으로 새정치국민회의(손세일 의원 대표발의)의 「남녀평등기본법안」을 일부 절충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의 현실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의 발전방향으로 「성평등기본법」을 대체입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sup>2)</sup>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작성한 「성평등기본법 시안」(2009), 「성평등기본법안」(2010. 6. 신낙균 의원 대표 발의)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여성정책기본법안」등이 법제명의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 법제명의 변경은 법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2009년 경기도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

2) 김엘림 외(2004),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여성부

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명칭 개정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5. 7. 1.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2013. 12.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안」, 2014. 1.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기본법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개정된 결과임<sup>3)</sup>.

### 3.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과 지역사회의 과제

#### ○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목적

- 2015. 7. 1.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정책의 양성평등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짐.
- 이를 위해 동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법 제1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성정책의 방향이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의 과제

- 2015. 6. 현재 충북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 그 외 시·군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입법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3)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안」은 양성평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상희 의원의 「성평등기본법안」은 여기에 “모성보호와 돌봄노동”的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합리적인 이유없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음.

-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실시되는 성 주류화 조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는 성 평등 수준 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조치들이 이미 제도로써 실시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자치법규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따라서 충북지역의 여성정책 발달과 성 평등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의 여성관련 조례를 젠더 또는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Ⅱ.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내용

### 1.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요 및 구조

#### 가. 개요

##### ○ 「양성평등기본법」의 의의

-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래 20년 동안 16차례의 개정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성희롱의 개념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의의공여의 의사표시」, 「성적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함.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 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함.
-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 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 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함.
-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sup>4)</sup>

## 나. 구조

### ○ 6장, 6절, 53개 조항과 부칙

- 「여성발전기본법」은 6개의 장, 36개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기본시책에 대해 ‘절’의 체계를 도입하였고, 17개 조문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장, 6개의 절, 5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 ○ 제1장 총칙

---

4) 여성가족부(2014.5.2) 보도자료,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中에서 발췌.

- 제1조~제6조로 구성
  - 법의 목적, 기본이념, 개념정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과 국가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등의 내용 규정.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7조~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개의 절로 나누어짐.
  - 제1절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제10조), 제2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제11조~제13조)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분함.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양성평등실태조사,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내용 규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4조~제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절로 나누어짐.
  - 제1절은 양성평등정책 촉진(제14조~제19조), 제2절은 양성평등 참여(제20조~제28조), 제3절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제29조~제34조), 제4절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제35조~제41조)으로 구분되어 있음.
  -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 지수,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과 공직·정치의 평등한 참여, 일·가정 양립지원, 모·부성 권리보장, 여성인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 교육·문화조성, 여성친화도시, 국제협력 등의 내용 규정.
-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42조~제44조까지 구성
  -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회계기관의 내용 규정.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 제45조~제51조까지 구성
  - 양성평등정책 연구, 교육 기관, 시설 설치 및 운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사박물관, 비영리단체 등 운영에 관한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 규정.
- 제6장 보칙
- 제52조~제53조로 구성
  - 권한의 위임·위탁, 국회보고와 관련한 내용 규정.

표 2-1.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비교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적극적 조치)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14조(여성주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제16조(공직 참여), 제17조(고용평등),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제18조(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제19조(가정교육), 제20조(학교교육), 제21조(평생교육),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22조(여성복지 증진), 제23조(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제2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제27조(여성 국제협력),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제23조(정치 참여),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40조(국제협력),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기금의 용도),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
제5장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32조의2(여성 사박물관의 설립·운영),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3조의3(첨문) * 제34조 삭제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9조(첨문),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6장 보적	제6장 보적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3조(국회 보고)

## 2.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성

### 가. 목적과 기본이념

#### ○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 법의 목적을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도모’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전환한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한 특성임.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목적과 이념	-남녀평등촉진 -여성발전도모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 나. 정의

#### ○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

-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 성희롱, 사용자에 대해 개념 정의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처음으로 ‘양성평등’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함.
-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성희롱의 범위도 고용상의 불이익에서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와 성적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용어 정의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성희롱, 사용자	양성평등(신설), 성희롱(범위확대), 사용자

#### 다. 국민, 국가 등의 책무의 범위와 내용

#####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민에게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양성평등 실현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음.

##### ○ 국가의 책무 규정

- 국가의 책무를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강화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등의 책무(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 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 ○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이 강화됨.

##### ○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li> <li>-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여성가족부장관 시행계획 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li> <li>-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li> <li>-여성가족부 장관 시행계획 점검 및 조정 요청</li> <li>-추진실적 종합 평가</li> </ul>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신설)</li> </ul>

## 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내용 및 기능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함.
  - 심의·조정 사항은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등임.
  - 또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을 시·도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전문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하여 성평등정책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강화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조정회의</li> <li>-심의·조정사항</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 2인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위원회</li> <li>-심의·조정사항 확대</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li> <li>*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li> <li>*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등</li> </ul>
	-여성정책실무회의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책임관 등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중앙행정기관의 장)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전담전문인력(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까지 확대)

## 바. 성주류화 조치

### ○ 성 주류화 조치에 대해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
-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각각의 성 주류화 조치에 대해 명시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함.
-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속 공무원 등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

### ○ 국가성평등지수 개발보급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도 개발·보급하여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주류화 조치 등	-정책의 분석·평가 등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성주류화 조치 명문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신설) -국가성평등지표, 지역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등(신설)

## 사. 적극적 조치 등 양성평등 참여

### ○ 적극적 조치의 구체화

-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 등 여성과 남성이 사회 전분야에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sup>5)</sup>를 취할 것을 명문화.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임의적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를 구체화 함.
- 적극적 조치의 개념을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5) 적극적 조치는 실질적인 성평등 촉진을 위해 그동안 차별받아 온 특정 성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차별로 보지 않음. 이러한 내용은 법률, 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단서에서는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내라면서 이를 차별이라 보지 않고 있음.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적극적 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실현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 촉진에서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하는 것으로 재규정함.

- 이는 적극적 조치의 본래 취지가 단순한 성별 균형 맞추기가 아닌 누적된 불평등의 시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차별로 인하여”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의 권고와 결과의 점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sup>6)</sup>

#### ○ 관리직 목표제 도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이른바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해야 하며,
-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고 임원 임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 ○ 여성의 대표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명시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적극적 조치 등 양성평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극적조치에 대한 임의 조항</li><li>-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건조성</li><li>-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극적조치에 대한 의무조항</li><li>- 관리직 목표제(신설)</li><li>- 공직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참여를 위한 시책 마련</li><li>- 정치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li></ul>

### 아.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6) 차인순(2014),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젠더리뷰」 2014년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58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용상 성평등’ 외에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모·부성권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표현된 모성보호에 대해 실질적인 모성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재개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 임신·출산·육아에 관해 ‘모성권’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부성의 권리가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성권’을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일·가정 양립지원

- 「여성발전기본법」에서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변경하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조문내용을 구체화 하여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경제참여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모성 보호</li><li>-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 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모·부성권 보장</li><li>- 일·가정 양립지원 :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 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 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등</li></ul>

7)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4.5),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발의일자: 2013. 12. 4 신경림의원 등 14명)

## 자. 인권보호

### ○ 성차별 금지 조항 신설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교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성차별 금지 조항(신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가해자 교정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 자.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구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차별 내용뿐만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여성친화도시’ 명문화

- 여성친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양성평등 실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화·통일 과정 양성평등 참여

- 평화·통일 과정에서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국내·외 여성평화 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li> <li>- 여성국제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문화조성</li> <li>-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신설)</li> <li>-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확대</li> <li>- 평화·통일과정 여성과 남성의 평등 참여와 활동지원(신설)</li> </ul>

카. 양성평등 기금

○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 기금의 용도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함.
- 즉,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 사업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함.
- 또한 양성평등 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한 조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기금 명칭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기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li> <li>- 여성단체 사업 지원</li> <li>-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 여성 국제협력 사업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li> <li>-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li> <li>-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등</li> </ul>
기금 설치		-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신설)

## **타.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 **○ 양성평등 정책 연구·교육 기관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여성발전기본법」에서의 「여성단체의 지원」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기관 설치·운영(신설)</li><li>-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사업 지원</li></ul>

## **3.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

### **가. 여성발전과 성평등<sup>8)</sup>**

#### **○ 법률개정의 필요성**

-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변경 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8대 국회에서는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이 입법대안으로 제시되었음.
- 법제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서 기본전제는 「여성발전 전략이 성 평등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논거는 우리나라의 여성개발지수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한, 성평

8)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과정에 대한 성평등기본법 입법토론회(2009, 국회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2011,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참조하였음.

등 수준은 낮다는 점임.<sup>9)</sup>

### ○ 성평등과 여성정책

- 당시 논의에서 “여성인력 개발의 정도에 비해 질적 수준의 향상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발전을 목표로 여성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점점 더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한 현실 앞에서 여성발전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성평등기본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여성정책기본법」에 대해서는 제명 그 자체에서 이미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제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자동 폐기됨.

## 나. 성평등과 양성평등<sup>10)</sup>

### ○ 법률 변경의 필요성

- 제 19대 국회에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이 각각 「양성평등기본법」(신경립 의원 안, 45개 조문), 「성평등기본법」(김상희 의원 안, 51개 조문)으로 제출됨.
- 법률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법안 모두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 법 제도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여성정책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이 요구됨.

### ○ 법률명에 대한 주장 논거

- ‘양성평등’의 논거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양성이 더 적합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법안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임.

9) 교육 및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UNDP의 성별개발지수(GDI)는 당시 상위권(2009년 155개국 중 25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정치·경제 영역에 대한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성별권한척도(GEM: 2009년 109개국 중 61위), 성별격차지수(GGI: 2009년 134개국가중 115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1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공청회자료, 국회의회록 등을 참조하였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성평등’의 주장 논거로서는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성평등이 적합하고,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지자체 성등평조례에서 이미 성평등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입법례는 「헌법」에 ‘양성의 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성평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성평등기본조례 66건, 양성평등기본조례 1건이 있음(2014년 입법 당시 기준).

#### ○ 법률적 합의

-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동성애자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른 자 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어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적 혼란의 발생이 우려됨.
- 실질적 양성평등의 달성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의 제공
- 법리적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sup>11)</sup>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부합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되,
- 이미 정부의 정책 내용에 성평등으로 쓴 용어(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평등 지수 등)는 그대로 사용하는 혼용을 추진함.

1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표 2-2. 전부개정안의 용어 비교

구 분	현행법	신경림의원안(개정안1)	김상희의원안(개정안2)
제명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목적	남녀평등이념 실현(제1조)	양성평등이념 실현(제1조)	성평등이념 실현(제1조)
기본계획 등	여성정책 기본계획(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제8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제8조)
정책조정	여성정책조정회의(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제9조): 총리소속 양성평등실무위원회(제11조)	성평등위원회(제12조) : 대통령소속 성평등 실무위원회(제14조) 분과위원회(제15조)
실태조사, 평등지수	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제13조)	국가양성평등지수 지역양성평등지수(제13조)	성평등 실태조사(제10조) 국가성평등지수(제11조)
여성주간	여성주간(제14조)	양성평등주간(제33조)	성평등 주간(제32조) : 3월 8일이 포함된 주
기금설치	여성발전기금(제29조)	양성평등기금(제36조) 성희롱 등 성차별 피해자 소송지원 추가	성평등기금(제39조) 가정폭력, 성차별 등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추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제21조의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제39조)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제44조)

## 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

### ○ 전부개정안의 주요 구성 및 내용 차이

- 제 19대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전부개정안(신경림의원안, 김상희의원안)은 법 제명에 따른 용어의 차이 외에 법률의 정의, 추진체계, 조문별 구성내용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2-3.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천행법(여성발전기본법)	신경림의원안	김상희의원안
제명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기본법
정의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관련시설, 성희롱 등(제3조)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인지(제3조)	성평등, 성인지, 국가기관 등, 사용자(제3조)
성주류화	-	-	성 주류화 조치(제33조)
남녀평등 교육	가정교육(제19조), 학교 교육(제20조), 평생교육(제21조)	성인지교육(17조)	성평등교육(29조)
여성참여 확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15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 60% 초과 금지 공직참여(제16조)  고용평등(제17조)	동등한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제19조) 위원회 위촉직위원 60% 초과 금지 관리적 승진목표제 공공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노력 동등한 정치 참여(제20조)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제21조)	의사결정과정 및 공직참여(제22조) 위원회 위촉직위원 60% 초과 금지  정치참여(제21조) 경제활동 참여(제23조)
여성 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제32조)	성평등 친화 지역(여성친화 도시), 공동체 지원(제38조)
기금설치	여성발전기금(제29조)	양성평등기금(제36조) 성희롱 등 성차별 피해자 소송지원 추가	성평등기금(제39조) 가정폭력, 성차별 등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추가
국제 협력, 국회보고	여성국제협력(제27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 보고(제36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 조약 체결·이행, 국제협력강화(제35조) 국회보고(제42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사전보고	국회보고(제48조) : ·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사전보고
여성사 박물관	여성사박물관(제32조의2)	-	여성사박물관(제43조)

## ○ 위원회의 소속

- 「성평등기본법안」은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며, 「성평등 정책책임관제도」를 시·도까지 확대하고 전문전담인력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성평등정책추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음.
- 「양성평등기본법안」에서도 「성평등위원회」와 유사한 추진체계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두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소속에 있음
-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이 경우 민간위원과의 공동위원장제도를 가지며,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표 2-4. 심의조정기구 비교

구 분	현 행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명칭	여성정책조정회의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부위원장	1인 여성가족부 장관	2인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위원	2인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위원
인원/ 민간위원임기	30명/2년	30명/2년	20명/1년
기능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성평등 정책의 중요사항 심의·조정
산하회의 또는 위원회	여성정책실무회의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성평등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 ○ 국가지역성평등지수

- 「양성평등기본법안」에는 「국가양성평등지수」 외에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역양성평등지수」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의무조항이 있음.

- 「성평등기본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성평등지수가 낮은 영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시·도지사가 성평등지수를 조사했을 때에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할 수 없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성가족부 의견이 제시됨.

표 2-5. 성평등지수 관련 조항 비교

현 행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신 설〉	<p>제13조(국가양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의 양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가양성평등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참여에 있어 양성의 평등 정도</li> <li>2. 양성평등을 위한 의식과 문화</li> <li>3. 양성평등을 위한 인권과 건강 복지</li> <li>4. 그 밖에 양성평등 수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i> </ol>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양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양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양성평등지수(이하 이 조에서 “국가양성평등지수”라 한다)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양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이하 “지역양성평등지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의 양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양성평등지수(이하 이 조에서 “지역양성평등지수”라 한다)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국가성평등지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전반의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된 결과 중 국가성평등지수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피해자 소송지원 관련

- 「성평등기본법안」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의 방지’ 조항을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조항으로 개정하여 성차별 방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하고 있음.
- 또한 성희롱 등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의 용도로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송지원의 대상을 성희롱, 성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로까지 확장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안」은 성희롱 등 성차별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과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기금지원사업으로 규정함.
- 현행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해당 사업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여성발전기금으로 그 회계를 전환하였음.

표 2-6.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현 행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절 양성평등기금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성희롱 등 성차별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지원 4.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장 성평등기금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단체 사업의 지원 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 적극적 조치

- 「양성평등기본법안」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적극적 조치에 대한 현행의 임의적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안」과 비교하면 참여 촉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함.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을 부각시키기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를 접근하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 2-7.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전부개정안 비교

현 행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 성 주류화 조치

-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에 대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여성가족

부가 당연부처처럼 인식되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책무성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라. 여성친화도시 관련

##### ○ 여성친화도시 관련

-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2013. 11.)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임.
-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 성평등친화도시 관련

- 「성평등기본법안」은 양성의 동등 참여, 여성친화적인 시설의 확대 및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성평등 친화 지역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안」과 비교할 때 여성친화도시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안」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 논쟁사항 및 합의

- 국회 논의 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이 미진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 해지 요건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친

화도시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 지원이 되는 등의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 및 해지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형태로 합의됨.

표 2-8. 여성친화도시 관련 개정안 비교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전정회의원안)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신 설>	<p>제22조의2(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여성친화도시 조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적인 시설의 확대 및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8조(성평등 친화 지역 및 공동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 정책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 그리고 친환경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 여성의 권리,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 마. 기타

### ○ 법률적 용상의 문제(추진체계)

- 현 시기의 ‘성평등정책전담기구’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되, 여성특정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성주류화 추진의 조직과 기구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 「양성평등기본법」의 과제

-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간의 연계와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정립<sup>12)</sup>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차별 등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양성평등기금 사용 근거 마련 등

---

12) 박선영(2014),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의의와 과제”, *젠더법학* 제6권 제1호(통권제10호), 한국젠더법학회, p.60

### III. 양성평등기본조례 현황

#### 1. 타 지역 조례 현황<sup>13)</sup>

##### 가. 전국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 ○ 조례 제정 기본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조례는 총 199개임. 광역 지자체는 17개 지자체 모두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226개 중 182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표 3-1.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광역(17)	기초(226)			전체
		시	군	구	
서울(26)	1			25	26
부산(17)	1		1	13	15
대구(9)	1		1	5	7
인천(11)	1		1	7	9
광주(6)	1			5	6
대전(6)	1			3	4
울산(6)	1		1	2	4
경기도(32)	1	27	3		31
강원도(19)	1	7	9		17
충청북도(12)	1	3	8		12
충청남도(16)	1	6	3		10
전라북도(15)	1	5	6		12
전라남도(23)	1	5	14		20
경상북도(24)	1	6	4		11
경상남도(19)	1	9	3		13
제주도(1)	1				1
세종시(1)	1				1
전체	17	68	56	58	199

\*( ) 안의 숫자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 숫자임.

13) 2015년 6월 2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검색한 관련 조례를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일부 검색이 되지 않는 조례에 한하여 자치법규시스템([www.elis.go.kr](http://www.elis.go.kr))의 검색자료를 활용함.

- 서울시, 광주시, 충청북도는 광역을 포함해 기초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며, 경기도도 1개의 기초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조례 제정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전체 24개 기초 지자체 중에 11개 지자체만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나. 조례명 및 종칙

### ○ 조례명

- 타 시·도의 조례명을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울산시는 「성평등기본조례」이며, 충청북도는 「여성정책기본조례」, 전라남도는 「여성발전조례」, 그 외 광역 지자체는 「여성발전기본조례」임.

지역별 조례명 현황

지역명	(양)성평등 기본조례 <sup>14)</sup>		여성발전(지원) 기본조례 <sup>15)</sup>		여성정책(발전) 기본조례 <sup>16)</sup>		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	1	15		10			26
부산		2	1	12			15
대구		1	1	5			7
인천		3	1	5			9
광주	1	1		4			6
대전		2	1	1			4
울산	1	3					4
경기도	1	18		12			31
강원도	1	2		14			17
충청북도		1		10	1		12
충청남도		4	1	5			10
전라북도		6	1	5			12
전라남도		3	1	16			20
경상북도		2	1	8			11
경상남도		3	1	8		1	13
제주도			1				1
세종시			1				1
계	5	66	11	115	1	1	199

14)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기본조례」와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포함함.

15) 「여성발전(지원)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함.

16) 「여성정책(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기본조례」와 「여성정책발전기본조례」를 포함함.

- 기초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은평구와 충청남도 청양군은 「양성평등기본조례」, 64개 기초 지자체 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이며, 강원도 태백시의 조례는 「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 114개의 기초 지자체는 「여성발전기본조례」임. 경상남도 진해시는 「여성정책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목적

- 조례의 목적은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실제 목적을 기술하는 부분임.
- 대부분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조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광주광역시 및 해당 기초 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 비교적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례임.(군포시, 김해시, 나주시, 대구광역시 동구·중구, 동해시, 마산시, 밀양시, 보령시, 부산광역시 금정구·기장군·남구 등도 유사 조문 내용)
- 「성평등기본조례」는 그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조항이 일반적임. 이하의 내용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사례임. 기초 지자체 「성평등기본조례」의 목적도 이와 유사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략)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략)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생략)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시·도의 책무

- ‘시·도의 책무’ 조항에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와 구체적

인 책무의 내용이 담겨있음.

-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임.
-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는 제3조(도의 책무) ②항에서 “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책무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성평등기본조례」의 경우 재원 마련 규정을 조례 조항에 넣음으로써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광역의 경우 서울시, 강원도, 울산시가 ‘시·도의 책무’ 규정에 재원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의무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자체마다 상이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서울시	제2조(시의책무) …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
강원도	제4조(강원도지사의 책무) … 성평등을 실현하는 각종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시	제4조(울산광역시의 책무) 시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시행계획

### ○ 시행계획 수립

- 지자체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은 조례 명에 따라 다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정책 기본조례」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전라남도 함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강원도의 동해시·태백시, 경상남도의 진해시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시행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은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 추진 목표’, ‘추진체계’, ‘주요시책’, ‘재원 조달방법’ 등을 기본으로 함.
-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경우 총칙에 ‘적극적 조치’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 호의 내용에 포함함.
- 서울시의 경우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 양성평등 실태조사

-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 조항이 없음. 광역의 경우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초의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진안군·부안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실태조사’ 조항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의무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인 충청북도만 강제규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라북도 3개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속력의 정도가 약함을 알 수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충청북도	제8조(여성관련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산시	제4조(정책의 여론·실태 조사 등) 시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진안군	제6조(정책의 여론 및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 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부안군	제6조(정책의 여론 및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 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다.

## 라. 추진체계

### ○ 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조례명에 따라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성평 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 발전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인 명칭 이외에도 ‘여성위원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여 성아동정책위원회’, ‘여성창의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의 명칭 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 ‘여성위원회’ 명칭은 서울시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서 주로 나타나며, ‘여성아동정책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 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임. ‘여성창의위원회’는 「전라북도 부안군 여 성발전기본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며, 「제주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사용함.
- 실무(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은 광역 지자체 12개, 기초 지자체 52개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음. 실무(분과)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실무적 인 필요에 따라 운영되므로 강제규정의 의미는 없음.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수시, 고 흥군, 장흥군, 진안군 등 소수의 전라지역 지자체의 경우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있음. 「진해시 여성정책발전 기본 조례」에는 위원

회의 기능을 ‘심의·자문·연구·조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기도 함.

-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 용산구, 광주시 남구, 경기도 김포시, 충청남도 서천군 등 몇 개의 지자체가 연 4회 개최하도록 하여 위원회 역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여수시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인권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진해시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연구·조사 등을 수행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 ○ 위원회 ‘위원장’의 지위

- 서울시,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경상북도의 경우 부위원장 2인 중 “반드시 …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권한을 강화함.
- 「서울시 금천구 성평등기본조례」 또한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돋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장과 위촉 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함. 경기도의 경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경기도의 사회통합부지사는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서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통합적인 권한을 부여받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경상북도	<p>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반드시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관</li> <li>2. 경상북도의회 여성관련 상임위원회 위원</li> <li>3.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li> <li>4. 기타 도지사가 여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금천구	<p>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li> <li>3. 관련분야 5급이상 공무원</li> </ol>
경기도	<p>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장 및 복지여성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가족정책 관련 전문가</li> <li>2. 도의회 의원</li> </ol>

## ○ 양성평등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 ‘양성평등책임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동두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성남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수원시 성평등기본조례」, 「연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 「평택시 성평등기본조례」, 「화성시 성평등기본조례」임.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제9조(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외 지자체 조례에서는 “…지정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이행의무 구속력은 약함을 알 수 있음.
- ‘전담전문인력’과 관련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음. 다만, 평

- 택시·고양시·시흥시·수원시 등 경기도 기초 지자체와 서울시 도봉구, 강원도 삼척시 조례의 경우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 평택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행의무 구속력이 약한 반면, 시흥시와 도봉구의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평택시	<p>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li> <li>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li> <li>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li> </ol> <p>③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도봉구	<p>제7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구청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li> <li>2. 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li> <li>3.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li> </ol> <p>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 ○ 성평등정책조정회의

- 경기도의 경우 ‘성평등정책책임관’ 밑에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두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기초 지자체(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도 광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경기도	<p>제25조(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책임관 밑에 경기도성평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성평등 정책의 조절에 관한 사항</li> <li>3. 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남양주시	<p>제16조(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도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li> <li>2.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절에 관한 사항</li> <li>3. 여성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협의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마. (양)성평등정책 촉진

### ○ 성 주류화 관련 조치<sup>17)</sup>

- ‘성 주류화 관련 조치’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룸.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광역 9개, 기초 99개의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성인지 예·결산’은 광역 6개, 기초 59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성인지 통계’는 광역 6개, 기초 53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성인지 교육’은 광역 1개, 기초 35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 ‘성 주류화 조치’ 사항 규정은 일반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이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대부분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본격 시행 이전에 제정된 조례들이기 때문임. 본격적으로 성 주류화 관련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그 흐름을 반영한 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이므로 관련 조항들이 주로 「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7) 성 주류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해당 조례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제 조항에 하위내용으로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정리함.

## ○ 지역 성평등지수(개발/보급/조사/공표)

- 지역 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거나 조사·공표하는 내용과 관련된 조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음.

## 바. (양)성평등참여

### ○ 적극적 조치

- ‘적극적 조치’ 관련 조항은 광역 15개, 기초 104개의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을 찾을 수 있음.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는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임.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의 경우는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 대신 ‘잠정적 우대조치’를 사용하고 있음.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세종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성평등기본조례」, 「여수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에서 ‘적극적 조치’ 와 관련한 강제규정을 명시함.
- 강제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18개 정도이며, 관련 조항이 있는 지자체 100개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인천시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대문구	제12조(적극적 조치) (생략)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략)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시	제13조(적극적 조치) (생략)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략)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 참여

- 「가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포함한 17개 조례를 제외하고 182개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공직 참여와 관련한 조항은 170개의 지자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공직 참여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을 중심으로 여성 공무원의 교육공직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 참여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음.

### ○ 경제활동 참여

-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경력 단절 예방”, “여성기업지원” 등으로 구성됨.
-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이행을 촉구하는 강제규정의 의미를 담고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서울시	<p>제16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li> <li>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li> <li>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li> <li>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li> <li>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li> </ol> <p>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p>

### ○ 모·부성 권리 보장(모성보호)

-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의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성평등기본조례」는 ‘부성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물론 현재까지 제정된 「성평등기본조례」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다음은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고 있는 강원도와 광주시 남구 「성평등기본조례」의

## 관련 내용입니다.

- ‘모·부성 권리 보장’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대부분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행의무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강원도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도지사는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남구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일·가정 양립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은 대부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나타남.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본조례」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5% 정도이며 나주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항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강조하여 명시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세종시	제1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항은 55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나타나

고 있으나 ‘여성인재 관리 육성’과 관련한 조항은 없음. ‘여성인적자원 개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 55개 중 47개의 조례는 해당 조항의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사.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 ○ 성차별 금지 및 개선

- ‘성차별 금지 및 개선’ 관련 조항은 163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차별 금지 및 개선’과 관련한 지자체의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141개 지자체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 폭력 예방 / 교육 / 실태조사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관련 조항은 168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관련한 조항도 149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관련 조항은 보통 ‘여성의 복지증진’ 조항의 하위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관련한 조항들은 대부분 지자체의 이행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정선군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저소득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 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외국인주부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복지 및 건강 증진

- ‘복지 및 건강 증진’ 관련 조항은 170개의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증진’과 관련한 조항은 45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복지 및 건강 증진’, ‘건강증진’과 관련한 조항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행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 (양)성평등 문화확산

### ○ 교육 및 문화조성

- ‘성평등 교육’ 관련 조항은 174개 지자체 조례에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조항은 ‘성평등 의식 제고’ 조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강진군	제21조(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문화조성’과 관련한 조항은 「서울시 중랑구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마포구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살펴볼 수 있음. ‘성평등 교육’ 관련 조항은 지자체의 이행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이 대부분임.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중랑구	제21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마포구	제22조(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 (양)성평등주간(여성주간)

- 현재 지자체의 조례에는 「(양)성평등주간」 관련 조항 보다 「여성주간」을 명시한 조항이 더 많음. 「양성평등주간」 관련 조항은 3개의 기초 지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평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원주시 성평등기본조례」, 「천안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양)성평등주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양성평등주간」 또는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이행의무 구속력은 다소 약함을 알 수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은평구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제30조(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 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조례는 광역 4개, 기초 29개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성평등기본조례」, 「은평구 양성평등기본조례」, 「동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된 관련 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은평구의 경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조항을 추가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강원도	<p>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li> <li>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li> <li>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li> </ol>
은평구	<p>제23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li> <li>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li> <li>3. 주거단지, 주택등 건축물</li> </ol>
동해시	<p>제45조(여성친화도시) 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동해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등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p>

### ○ 국제협력 및 평화통일 참여

-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광역 12개, 기초 77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항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조항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부산시	제21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안양시	제22조(국제협력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자. (양)성평등 기금

#### ○ 타 시·도 관련 조항 검토

- ‘성평등 기금’ 또는 ‘여성발전 기금’과 관련한 조항은 17개 광역 지자체 조례에 모두 수립되어 있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139개 조례에 수립되어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

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서울시의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함.

## 자. 기타

### ○ 주민(군민/구민/시민/도민)참여

- '주민참여'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울산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를 포함한 2개 광역 지자체 조례와 「관악구 성평등기본조례」, 「서천군 성평등기본조례」를 포함한 39개 기초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울산시	제3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관악구	제3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서천군	제35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양산시	제2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의견수렴창구 운영

- 「서울시 영등포구 성평등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의견수렴창구 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영등포구	제17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서울시 동작구 성평등기본조례」와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기본조례」에는 ‘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임.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동작구	제24조(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구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제4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5조 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2. 성평등 조성사업에 대한 수립, 시행, 평가 3. 성평등 관련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5.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6. 지역공동체 활성화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8. 그밖에 성평등 관련 사항 ③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 「경기도 안양시 성평등기본조례」,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기본조례」에는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안양시	제25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 역량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성소수자 인권 보장

-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에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과천시	제16조(성소수자 인권 보장)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성평등의 날 운영

- 「동작구 성평등기본조례」, 「송파구 성평등기본조례」, 「시흥시 성평등기본조례」 등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중에서 1일을 ‘성평등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동작구	제9조(여성주간사업)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중에서 1일을 「성평등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인력개발센터 등) 지원

- ‘인력개발센터 지원’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광역 6개, 기초 3개이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관련 조항을 포함한 기초 지자체의 조례로 「무주군 성평등기본조례」가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무주군	제22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일자리지원에 필요할 때에는 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조사 3.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 4. 그 밖의 여성일자리 지원업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성차별상담센터 설치

- 「경기도 안산시 성평등기본조례」 제50조에는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자치단체명	조문 내용
안산시	<p>제50조(설치) 시장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51조(업무)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li><li>2. 직장 내 성희롱예방과 양성평등의 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li><li>3.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망 구축</li><li>4. 성차별 관련 조사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ol> <p>제52조(유급상담원) 상담센터에는 2인 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의 보수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2. 충청북도 시·군 조례 현황

### 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모두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기본 조례에 대해 충청북도는 「여성정책기본조례」, 증평군은 「성평등기본조례」, 나머지 시·군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도내 시·군 대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명은 상이함. 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항목들은 명시되어 있음.

#### ○ 기타 성평등 관련 조례

-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조례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진천군, 단양군을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

- 청주시와 제천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성평등성을 명시하고 있음.

시·군	조례명	기타 양성평등관련 조례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조성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	
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
보은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옥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영동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		
진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	
괴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	○	
음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		
단양군	여성발전기본조례	○	

- 대부분 기본조례에서 여성위원회의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진천군은 「여성위원회위촉규정」을 따로 마련함으로서 여성위원회의 위촉 비율을 강조함.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에서는 위원회 위촉 규정에서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시·군	조례명	위원회 위촉 관련 조항	각종 위원회 위촉규정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여성 30%이상 위촉
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2015.7.개정)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여성 30퍼센트 이상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금지
보은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퍼센트 이상 위촉	
옥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퍼세트 이상 위촉	
영동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퍼센트 이상 위촉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70% 초과금지	여성 100분의 30 이상 위촉
진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여성위원회 30%이상 위촉
괴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음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30% 이상 위촉	
단양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 40% 이상 위촉	

\* 충청북도, 진천군은 여성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 나. 충청북도 시·군 조례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기본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충청북도와 시·군의 기본조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마다 조항과 강제성의 차이가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 규정하는 조항의 내용에도 차이가 나타남.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시·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내용	실태조사 실시시기
충청북도	시행계획	여성관련 실태조사 등	제8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주시*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성인지통계)	제4조)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기본계획	관련 통계 및 조사	제7조)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천시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제7조)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성인지통계)	제6조)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시행계획	통계관리 및 조사	제5조)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관리
영동군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제6조)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증평군*	시행계획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28조)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진천군	시행계획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제7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괴산군*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성인지통계)	제7조)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등	제8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초조사, 여론조사
단양군	실시계획 (시행계획)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제6조)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초조사, 여론조사

\*표는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사항임.

##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였음.
-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조항은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으로 위원회 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상을 갖춘 위원회로 기능함.
- 충평군은 기본조례명이 「성평등기본조례」 이므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청주시와 옥천군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여성정책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조례의 제/개정이 없으므로 기본법에서 신설된 실무(분과)위원회, 양성평등책임관, 전담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은 없음.

시·군	명칭	위원장	당연직	간사
충청북도	여성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및 여성정책관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
청주시	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복지교육국장	여성업무담당과장
충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부시장, 여성업무담당 국장	여성업무담당과장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팀장
보은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여성업무담당과장	여성업무 담당계장
옥천군	여성발전위원회	군수	여성업무담당 과장	여성보육팀장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여성업무담당과장	여성업무담당 주사
증평군	성평등위원회	부군수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	성평등 정책업무

			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담당주사
진천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주민복지과장(부위원장)	여성정책팀장
괴산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여성업무팀장
음성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여성업무담당 팀장
단양군	여성정책위원회	부군수		여성가족팀장

### ○ 양성평등정책 촉진

- 성주류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미흡한 상태임
- 대부분의 시·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명시하거나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함께 성인지 통계에 대한 항목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됨.
- 그러나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성 주류화의 중요한 수단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명시조항이 없음.
- 각 시·군의 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명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군	정책 촉진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평등 지수
충청북도	○	○	○	○	
청주시	○		○		
충주시	○		○		
제천시	○	○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	○	○	
진천군	○		○		
괴산군	○		○		
음성군	○		○		
단양군	○		○		

## ○ 양성평등 참여

- 정책결정과정참여, 공직참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수용하고 있음.
- 적극적 조치는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에서는 명시되지 않음.
- 정치참여 조항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치참여 지원이 정치적 이해와 악용의 우려로 인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인재관리육성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하지 않음.
- 기본법에서 신설된 모·부성권리에 대해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음.
- 일·가정양립 지원내용은 증평군과 음성군에서 지원에 대해 명시함.

## ○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 성차별 금지와 개선에 대한 조항과 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됨.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은 기본조례에서 명시하기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 있음.
- 건강 증진 항목은 증평군에만 명시하고 있음.
- 폭력실태 조사는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실행하기에는 여전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양성평등 문화확산

-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대한 명시가 없는 시·군이 5개 있음.
- 양성평등주간은 현재는 ‘여성주간’으로 명시하고 지원하고 있음
-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은 대부분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에 추가되어 있는 평화통일 참여의 조항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되지 않음.

## ○ 양성평등 기금

-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3개 군(보은군, 옥천군, 괴산군)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음.

### ○ 단체지원

- 단체지원은 모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주민참여

-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도내 유일하게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 포상

- 포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확산을 추진하는 시·군은 3개(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임.

### ○ 관련기관 운영

- 관련기관은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부분 여성회관이 운영됨).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시·군	관련기관					
	여성 인력개 발센터	여성 새로일하 기센터	여성발 전센터	여성문 화센터	여성 회관	여성사 박물관
충청북도	○	○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 다. 중복지역 조례의 특성 및 개선방안

###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조례운영 한계

- 기본조례는 대체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은 수행되고 있으나, 양성평등 실현의 기본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기본조례에서 모든 시군에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성평등 지수’, ‘정치참여’, ‘인재관리육성’, ‘폭력실태조사’, ‘평화통일참여’ 등의 조항임.
- 성 주류화 조치 내용(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몇 개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고, 성인지 교육은 충청북도와 진천군에서만 명시하고 있음
- 모든 시·군에서 단체지원은 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는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진천군을 제외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시행됨.
- 충청북도와 시·군의 (조례명은 다르더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기본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조례간 위상과 기능에 혼란이 있음.
- 따라서 기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조례에 대해 기본조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 ○ 조례명의 개정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의의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것임.

- 현행 기본조례는 법의 취지와 이념을 실현하는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조례 명이 가지는 한계가 있음.
-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행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명으로의 개정이 필요함.

### ○ 여성위원 위촉 비율의 조정

- 현행 조례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비율은 대부분 “3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성 주류화 정책 추진에 맞게 성별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현실적 어려움으로 40% 이상의 여성위원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예 기간과 실무(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예외규정 등으로 보완하여야 함.

###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에 있어 도와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여야 함.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 주민참여 보장

- 개정되는 기본조례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기본 이념에 맞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성평등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 IV. 충북지역 조례개정 방향

###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 5. 28.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
  -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 의식 해소, 여성능력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
  -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기회의 평등보장이 아니라 평등한 조건과 공평한 결과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음.
  - 법의 이념과 추구하는 바가 변경됨으로써 정책의 방향전환이 예견되는 바동 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조례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의 변화 필요
  -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 배경에는 여성발전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는 성별격차의 문제가 존재함.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4년에 발표한 세계성별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0.640(완전평등은 1.00)으로 전체 142개국 중 117위의 평등순위를 기록.

표 4-1. 최근 3년간 우리나라 GGI 현황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리
2014	117/142	0.64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한국의 성평등보고」

- 충북지역의 경우 성평등 수준은 경제활동, 보건, 복지, 문화정보 분야에서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그 외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안전, 가족분야는 전국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4-2. 충북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완전평등 : 100

분야	평균			세부지표	평균		
	충북	전국	격차		충북	전국	격차
경제활동 분야	69.3	67.7	1.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8	68.6	2.2
				성별임금격차	61.7	59	2.7
				상용근로자 성비	75.3	75.6	-0.3
의사결정 분야	21	21.2	-0.2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17.3	21.8	-4.5
				5급이상공무원성비	18.1	23.9	-5.8
				관리자 성비	27.5	17.8	9.7
교육·직업·훈련	92.7	94.3	-1.6	평균교육년수 격차	85.3	88.6	-3.3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성비	100	100	0
복지	75.3	74.8	0.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6.7	74.4	2.3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73.9	75.3	-1.4
보건	96.8	96.4	0.4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96.1	97.3	-1.2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97.4	95.4	2
안전	60.8	62.4	-1.6	사회안전도 인식 차이	57	67.4	-10.4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64.7	57.5	7.2
가족	58.5	61.3	-2.8	가사시간 성비	25.6	26.2	-0.6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7.5	92.5	5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88.8	92.6	-3.8
				육아휴직자 성비	22.2	34.1	-11.9
문화·정보	86.9	85.4	1.5	여가시간 성비	75.8	74.5	1.3
				여가시간만족도 성비	94.7	91.3	3.4
				인터넷이용률 성비	90.1	90.5	-0.4

\* 격차는 전국평균 대비 충북 평균 값으로 산식은 (충북 평균-전국평균)

-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 결과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중위 수준(2012~2013년도 중하위권에서 2014년 중상위권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지표별 평균값은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활동이 요구됨.

#### ○ ‘성 주류화 조치’의 도입과 조례의 현실화

- 「양성평등기본법」은 법령과 정책 시행 및 법령의 해석에 성 평등 관점 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추진기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규정을 신설하였음.
- 성 주류화 조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통계법 등 각각의 개별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책의 성별 분석에 대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의 법률 반영과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행체계를 정비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통합 관리할 필요 있음.

## 2. 중북지역의 특성과 조례개정의 한계

#### ○ 시·군별 여성의 지위와 욕구 수준의 차이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통해 충북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전년대비 향상되었고 특히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보건 분야의 성별 격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여성의 지위와 상태는 시·군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충북지역의 특성임.
-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충북지역에서도 발생하여 전문대출이상 학력의 여성은 시단위 지역과 청주시 인근 군 단위를 중심으로 높게 분포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대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으로 노령인구, 다문화가구 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환경변화는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생.

- 이러한 특성들은 여전히 충북지역의 경우 여성 또는 여성 발전 중심정책이 부분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하며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중점 시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표 4-3. 시·군별 여성의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시군	노령화지수	다문화 가구수	25세 이상 여성 중 대출이상학력	여성 경제활동참 가율	시·군 여성의원수 (비율)
청주시	50.2	10,010	21.6	50.5	2(8.7)
충주시	106.8	3,335	15.2	51.9	3(17.6)
제천시	114.8	1,459	13.8	48.7	3(27.3)
청원군	85.3	700	18.6	-	1(10.0)
보은군	280.1	1,117	6.9	53.6	2(28.6)
옥천군	189.4	212	10.4	55.6	0
영동군	229.4	368	9.2	57.1	0
진천군	102.0	230	11.2	55.0	0
괴산군	315.9	1,094	7.1	59.6	1(14.3)
음성군	114.2	241	11.4	58.2	0
단양군	219.5	1,128	9.9	56.0	0
증평군	82.5	158	14.3	56.0	0

주1) 2013 시군별 노령화 지수,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주2) 다문화가구수·대출학력여성비율, 2010 인구총조사

주3) 대출학력은 전문대출 이상

주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4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청원군은 2014.7.1. 청주시로 통합)

주5) 2014년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출직 기준

### ○ 높은 정책욕구에 비해 허약한 추진체계

- 시·군별 다양한 형태의 욕구와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과제가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정책 추진부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와 시 단위 지자체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군 단위 지역에서는 복지관련 부서에 속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뿐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추진 전략에도 한계로 작용함.
- 따라서 허약한 추진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통합, 조정, 관리 기능의 강화 및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

이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음.

표 4-4. 충청북도 시·군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분		부서명		업무담당
광역	충북도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팀
기초	청주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충주시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제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보은군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계
	옥천군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장
	영동군		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진천군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
	괴산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음성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단양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증평군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 조례의 한계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지역 조례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그러나 시·군별 다양한 정책욕구를 단일한 조례에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한계와 함께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체계의 강화를 제안하며 그에 따른 실행력 담보를 목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3. 기본조례안

####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00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 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00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

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00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추진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하며,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주류화 조치 관련 부서의 5급 이상의

## 공무원

2. 위촉직 : 시의회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 위촉 해지)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과정을 공개하거나 참관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00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양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 조정·점검·평가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 등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관리직 목표제(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참여 촉진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출산·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일·가족 양립 지원)**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 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보호조치 등

제3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한 가족)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하며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정책이나 계획,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 그리고 생태환경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00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법 제3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시민제안)**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00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44조(기금운용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4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 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시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하는 단체

제4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기금의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00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양성평등 기관시설 등)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연구·교육 기관이나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이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정책 또는 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00시 여성정책 또는 발전 기본조례」 제00조 및 제00조 따른 여성정책 또는 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 및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00시 여성정책 또는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00조에 따라 설치된 00시 여성발전기금은 제3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00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00시 여성정책 또는 발전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00시 여성정책 또는 발전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4.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18)

개정내용	변경사항 및 근거 등
조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li> <li>- 현행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된 증평군 1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10개 지자체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li> <li>- 「성평등」은 「양성평등」에 비해 평등수준의 측정 및 개념이해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성(性)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li> <li>- 따라서 현재 「성평등기본조례」로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명은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여타 시·군의 경우 「양성평등기본조례」 또는 「성평등기본조례」 중 상황에 따라 선택도록 함.</li> </ul>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00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제1조(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이념의 실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li> </ul>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	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3조에 따라 “양성평등”과 “성희롱”을 개념 정의함.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참조하여 성차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양성평등기본법 해당조문

1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지역 조례개정방향 연구를 위한 정책간담회(2015. 7. 21.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p>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p> <p>2. “성차별” 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3.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p> <p>5. “성 주류화”란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p>	<p>에 따라 성인지, 성 주류화를 용어 정의.</p>
---	--------------------------------

<p><b>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b> 00시 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 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b>②</b>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 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p>	<p><b>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의무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인식.</li> <li>- 따라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 개념을 동 조항에 신설하였음.</li> </ul>
<p><b>제4조(시장의 책무) ①</b> 시장은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 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b>②</b>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p>	<p><b>현행 유지</b></p>
<p><b>제5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b>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b>②</b>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 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5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충청북도 주민참여조례」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조항 신설</li> <li>- 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조항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 신규조항으로 신설</li> <li>-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해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li> </ul>
<p><b>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 양성평등 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p>	<p><b>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타법 과의 관계조항이 법 제6조에 신설됨으로</li> </ul>

<p>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써 둘 조례에도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p>
<p><b>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b></p> <p>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li> <li>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li> <li>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li> <li>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p>	<p><b>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서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함.</li> <li>- 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기본정책 수립의 의무는 없으나 현행 대부분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시행계획 수립이 명시되었다는 점,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 조항을 기본조례안에 포함.</li> <li>- 아울러 현재의 정책추진체계가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수 없다는 현실과 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하면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조문 등을 이유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함.</li> <li>- 그 외 법제9조와 시민社会의 참여유도 등을 근거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li> </ul>
<p><b>제8조(양성평등위원회)</b>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00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ol>	<p><b>제8조(양성평등위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운영되던 여성정책 또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이 규정함.</li> </ul>

<p>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p> <p>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9조(구성과 임기)</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추진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당연직 :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주류화 조치 관련 부서의 5급 이상의 공무원</p> <p>2. 위촉직 : 시의회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b>제9조(구성과 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이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규정함.</li> <li>-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모든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위원회 위상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위촉자격기준 확대 및 공동 부위원장제를 도입.</li> <li>- 당연직 부위원장의 직급은 군 단위의 자치단체의 경우 담당 실과장으로 수정 가능함.</li> <li>-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은 타시도 사례와 충북지역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등을 참조하였음.</li> </u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현행유지</p>
<p>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장(과장)로 한다.</p>	<p>현행유지 다만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2조(분과위원회) -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p>

<p>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설</p>
<p>제13조(위원 위촉 해지)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 될 때</li> <li>3. 위원 <u>스스로</u>가 위촉해지를 원 할 때</li> </ol>	<p>제13조(위원 위촉 해지) 위원의 위촉해지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 도록 함.</p>
<p>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 기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 성과 시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시 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과정 을 공개하거나 참관을 허락할 수 있다.</p>	<p>현행유지</p>
<p>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에게는 「00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p>	

<p>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p> <p>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양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한다.</p> <p>③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b>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3조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책무로 확대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책임관은 해당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책임관의 지정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양성평등 정책의 통일성있는 추진과 정책의 조정, 관리, 평가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li> <li>- 아울러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양성평등정책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신설.</li> </ul>
<p><b>제18조(성 주류화 조치)</b> 시장은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b>제18조(성 주류화 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음.</li> </ul>

<p>제19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현행유지</p>
<p>제20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성인지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생략된 성인지 예산을 성주류화 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li> </ul>
<p>제21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현행유지</p>
<p>제22조(공무원 등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p>	<p>제22조(공무원 등 성인지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8조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li> </ul>

<p>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성인지 교육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공무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p>
<p><b>제23조(적극적 조치)</b>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현행유지</p>
<p><b>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b>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관리직 목표제(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p>	<p><b>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양성평등한 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현행 충북지역 대다수의 여성발전 관련 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30% 정도로 할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하고 여성보다 양성을 중심으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li> <li>-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동 조항을 변경 함.</li> <li>- 아울러 현행 여성발전 관련 조례는 공</li> </ul>

	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을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직 목표제로 변경하였음.
제25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유지
제26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참여 촉진	현행 유지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p>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임신·출산·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모성의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강조, 보호가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는 특징이 있음.</li> <li>- 따라서 현행의 <u>모성보호조항</u>을 법 제25조에 따라 모·부성권으로 변경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의 시책 마련을 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규정함.</li> </ul>
<p><b>제28조(일·가족 양립 지원)</b></p> <p>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li> <li>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li> <li>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 활성화</li> <li>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li> <li>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li> <li>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li> <li>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li> </ol>	<p><b>제28조(일·가족 양립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남성 출산·육아휴직제 장려,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대한 시책마련을 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규정함.</li> </ul>

<p><b>제2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b>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현행유지</p>
<p><b>제3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li> <li>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li> <li>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④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li>⑤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i> </ul>	<p><b>제3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은 법 제29조에 ‘성차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성차별금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따라서 법 제29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li> </ul>
<p><b>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b>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p>	<p>현행유지</p>

<p>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li> <li>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li> <li>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보호조치 등</li> </ol>	
<p>제3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현행유지
<p>제33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3조(건강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건강증진 및 모성보호 강화 조항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시책 및 모성보호에 대한 불이익</li> </ul>

	<p>금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한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이에 동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신설하였음.</li> </ul>
제34조(양성평등한 가족)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정책이나 계획,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제34조(양성평등한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은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조항으로 이분되었음.</li> <li>「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두 개의 조항을 하나로 합치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확립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를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개정안에서도 이를 따름.</li> </ul>
제35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유지
<p>제36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6조(양성평등 문화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7조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li> <li>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양성평등한 문화조성 및 양성평등주간의 기념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li> </ul>

③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 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행사,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규정하고 그 밖에 민간영역에서 실시하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양성 평등문화조성의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그 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유공자 포상 및 표창 규정을 마련함.

제3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 그리고 생태환경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 법 제39조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그 기본이념이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 구현’ 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제38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 제38조(국제협력 지원)

-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 국제협력 지

<p>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다.</p>
<p>제39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9조(평화·통일 과정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는 “평화통일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li> <li>-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도 양성의 평등한 참여 및 여성의 평화통일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li> </ul>
<p>제40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00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출연금</li> <li>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li> <li>3. 기타 수입금</li> </ol>	<p>제40조(기금의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2조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함.</li> </ul>
<p>제4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li> </ol>	<p>제41조(기금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라 기금의 용도도 법 제43조의 규정을 따른다.</li> </ul>

<p>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p> <p>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p> <p>4. 법 제3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p> <p>5.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2조(시민제안)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42조(시민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기금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li> </ul>
<p>제43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p> <p>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되며, 여유자금은 「00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투자하여야 한다.</p>	<p>현행유지</p>

<p>③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p> <p><b>제44조(기금운용심의)</b>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li> <li>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li> <li>4. 시민제안사항</li> <li>5.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li> </ol> <p>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 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li> <li>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li> </ol>	<p><b>제45조(지원대상)</b></p> <p>- 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토대로 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p>
--	--

<p>가 시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p> <p>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하는 단체</p> <p><b>제4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기금의 회수) ①</b>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li> <li>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li> <li>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정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li> <li>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p>	<p>제4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기금의 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 및 타시도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기금 회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li> </ul>
---	---

<p>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p>	
<p>제4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 금운용관은 양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 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 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 로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유지
<p>제48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 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 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00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양성평등 기관시설 등) 시장은 양성 평등정책 연구·교육 기관이나 양성평 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이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50조(양성평등 기관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관련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을 양성평등정 책 관련 기관·시설로 변경함.</li> </ul>

## 참고자료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 발의)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 발의)검토보고서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외(2004),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여성부

박선영(2014),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의의와 과제”, 젠더법학 제6권 제1호 (통권제10호), 한국젠더법학회

차인순(2014), “여성발전기본법 영향과 한계”, 젠더법학 제6권 제1호(통권제 10호), 한국젠더법학회

차인순(2014),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젠더리뷰」 2014년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4.5.2) 보도자료, “19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국회여성위원회(2009),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과정에 대한 성평등기본법 입법토론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1),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



## **부록1. 양성평등 기본법**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7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

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체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체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16조

-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19조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 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

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

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접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31조

-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벌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협약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 운영하려면 시 ·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 · 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시 · 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 ·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록2. 충청북도/시·군 조례 (양)성평등 근거 조항**

---





## 충청북도/시·군 조례 (양)성평등 근거 조항

법(조례)명	내 용	
여성 발전기본법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양성평등기본법	<p>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p>	
성별영향분석평가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충 청 북 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주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포함한다)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도정시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조례)명	내용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li> <li>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li> <li>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li> <li>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li> <li>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li> </ol>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주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p>제3조(시의 책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적극적 조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② 시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p>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p>제3조(시의 책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적극적 조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법(조례)명	내 용	
여성친화 도시조성에 관한조례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제천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조(군수의 책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실질

법(조례)명	내 용
	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3조(여성위원회 비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괴산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괴산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음성군	제2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양군	제2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안과제 보고서 2015-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지역 조례개정방향**

**충청북도 시·군 조례 개정 방향**

**인 쇄 2015년 8월 17일**

**발 행 2015년 8월 20일**

**발행인 유영경**

**발행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360-1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Tel. 043-220-6481 / Fax. 043-220-6479

<http://woman.cb21.net>

**발간등록번호 73-6430302-000039-01**

**ISBN 979-11-954360-8-8**

**인쇄처 투에스시스템 Tel. (043) 222-9540**

---

